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4월 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금지 물건에서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 함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1조제9호”를 “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통안전시설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 <u>영 제11조제9호</u> 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 <u>영 제24조제1항제2호</u> 카목----- -----.
1. <u>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시설물</u>	1. <u>교통안전시설물</u>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- 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 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- 제24조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제4조(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)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·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공중보건,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3.29]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24조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)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.

1.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용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·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·도지사가 시·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

다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

라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

마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

바.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산림보호구역

사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

아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

자. 관공서·학교·도서관·박물관,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, 공회당·사찰·교회 및 그 부속시설

차. 화장장·장례식장 및 묘지

카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·일반국도·지방도·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·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. 다만,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,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타. 다리·축대·육교·터널·고가도로 및 삭도(索道)

2.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

가. 도로표지·교통안전표지·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

나. 전봇대

다. 가로등기둥[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(懸垂旗)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
라. 가로수

마. 동상 및 기념비

바. 발전소·변전소·송신탑·송전탑·가스탱크·유류탱크 및 수도탱크

사. 우편함·소화전 및 화재경보기

아. 전망대 및 전망탑

자. 담장(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)

차. 재배 중인 농작물

카.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

[전문개정 2011.10.10]

[제10조에서 이동 <2011.10.10>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2호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비용 발생이 없음

4. 작성자

산업위원회 조영홍 의원